

##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0. 10.

제안자 : 국회운영위원장

### 주 문

- 가.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, 남북간의 교류·협력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「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17인으로 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2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.

### 제안이유

지난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와 교류·협력의 계기가 마련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고조되고 있음.

남북정상회담이후 전개되는 이러한 남북관계발전에 대하여 국회차원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